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595
등록일자	2026. 1. 6.
결재일자	2026. 1. 6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

주무관	희망복지팀 장	사회복지과 장	복지국장	부시장	시장
배지은	나참이	공은미	서미경	민기식	2026. 1. 6. 변광용
협조자					

2026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

요 약 서

● 사업목적

공적지원제도 대상자 탈락(제외), 중한 질병,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,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**제도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더 포용적,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.**

● 사업예산: 10,000천원(시비 100%)

● 지원내용

- 생계비: 긴급복지지원금 기준 50% 지급, 최대 3개월 지원
- 의료비: 최대 300만원내 지급, 1회 지원

● 선정기준 * 사업근거 법령: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기준 준용

- 소득: 중위소득 75%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
- 일반재산: 152,000천원이하
- 금융재산

(단위:천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금액	8,564	10,199	11,359	12,494	13,556	14,555

● 기대효과

- 적극적인 복지지원사업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
- 위기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도모

사회복지과
(희망복지팀)

2026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

정책결정 사전 점검표

★ 반드시 방침(보고)서 첫 페이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세 부 내 용		점검 완료	해당 없음
일 반 사 항	규정/근거	관련 법령, 조례, 규칙 및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등	☒	☐
	추진경위	공약사업, 전략사업, 지시사항 이행사업 등 사업추진 배경 (공적지원대상자 이외 한시적으로 생계·의료비 지원 자체 시책)	☒	☐
	예산확보	☐ 국비 ☐ 도비 ☒ 시비 ☐ 기타 ()	☒	☐
	홍 보	☐ 보도자료 ☐ 소식지 ☐ SNS ☐ 설명회 ☐ 기타 ()	☐	☒
절 차 검 토	절차검토	☐ 일상감사 ☐ 투자심사 ☐ 용역심사 ☐ 공유재산심사 ☐ 타당성검토 ☐ 시의회 승인 ☐ 영향평가 ☐ 성인지적 관점 (양성평등 실현 등)	☐	☒
참 여 소 통	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을 검토했습니까?		☐	☒
	주민참여	☐ 토론회 ☐ 공청회 ☐ 공모 ☐ 설문조사		
		☐ 위원회 ☐ 기타 ()		
	전문가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		☐	☒
	전 문 가 자 문	☐ 이행완료 ☐ 예정 (이행방안 : 자문위원회, 법률 자문 등)		
	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했습니까?		☐	☒
	갈등관리	☐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☐ 민원 발생 (갈등요소 :)		
협 치 협 업	협치대상	☐ 관련기관 ☒ 관련부서 ☐ 관련단체 ☐ 기타	☒	☐
	협치방법	☒ 정보공유 ☐ 공동주관 ☐ 민간위탁 ☐ 기타		
	타 기관, 부서, 단체 등과의 협업 검토 및 협의를 완료했습니까?			
	협치대상(명칭)	협 치 내 용		
사회적 가 치	사업추진을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? ※ 중복 체크 가능			
	☐ 인권보호 ☐ 근로, 생활환경 안전 ☒ 보건복지 ☐ 노동권 보장			
	☒ 사회통합(사회적약자 기회제공) ☐ 대기업-중소기업 상생협력			
	☐ 일자리 창출 ☐ 공동체 복원 ☐ 지역경제 공헌 ☐ 기업윤리			
	☐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☐ 시민참여			
	☐ 기타 공공성()			

2026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

- 현행법령과 공적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지원 등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생계비, 의료비를 일시 지원하고자 함.
- **제도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**을 폭넓게 보호하여 복지안전망을 섬세하게 구축하고 대상자의 위기 상황의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I 사업 개요

- 추진근거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조(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)
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등
「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
- 사업목적
현 법령과 공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한시적 생계·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하고자 함
- 사업예산: 10,000천원(시비100% / 301일반보전금, 02사회보장적수혜금)
- 지원실적

구분	지원건수	지원액(천원)	비고
2024년	8(의료비8, 생계비0)	10,579	89% 집행
2025년	7(의료비7, 생계비0)	10,796	90% 집행

II 지원 내용

- 지원 절차
 - 1) 현장확인서 및 구비서류 등은 긴급복지지원 절차와 동일하게 구비
 - 2)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가 있는 경우 → (최근 1년 이내)소득재산 상세내역 확인
공적자료 및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→ 공적지원제도 신청과 동시 틈새지원 신청, 확인
 - 3) 적정성 심사는 사후조사 이후 신청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생략하나
허위, 부정한 신청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
- 지원 기준 및 내용

구분		생계비	의료비
지원대상		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적용	긴급복지지원 외 중한질병·부상 대상자 (정신질환, 재활, 요양 등 포함)
		※ 타 사업(긴급복지지원, 기초생활수급 등) 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상자 제외	
선정기준	소득	중위소득 75%이하 실 생계 곤란자(1인 1,923천원)	
	일반	152,000천원 이하	
	금융	1인 8,564천원, 2인 10,199천원, 3인 11,359천원, 4인 12,494천원 등	
	그외	사업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→ 자체 내부검토를 거쳐 지원 가능 *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0 근거	
지원기준	생계비	· 생계비(1인 391,500원 / 2인 643,300원 / 3인 822,000원 / 4인 997,300원) ·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% 지원 ·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, 최대 3개월간 지원	
	의료비	·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· 정신질환, 알콜치료, 입원환자(간경비, 요양비, 재활비 포함), 심리상담센터 검사 및 치료비 지원, 압류된 재산으로 재산권 행사 불가 등 · 의료기관으로 지급 원칙	

III 사후관리(민간자원연계)

- 저소득층새지원사업 지원종료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, 공적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



-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연계
- (민간)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, 이웃돕기 성금연계, 대한적십자 희망풍차,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기가정지원사업 연계 등

IV 기대효과

-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, 섬세하고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도모.
- 적극적인 복지지원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복지 체감도 증진. 끝.